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 제목** : 음악바우처 강사 등록 규정 개선요청

□ **신청 취지**

신청인은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의 학위를 소유한 자로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사업의 제공 인력으로 등록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은 ‘클래식’ 전공자가 아니면 제공인력 등록이 안 된다고 하여 제공인력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실용음악 전공자이고 음악을 가르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음에도 클래식 전공을 해야만 제공인력 등록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고, 이런 규정은 실용음악 전공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피신청인 등의 주장**

1) 피신청인은 고충민원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사업에서 ‘악기 또는 성악 등의 클래식 전공자가 아닌 실용음악 전공자의 경우에도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는 ‘서비스제공 인력은 시에서 지정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의 경우 제공인력으로 등록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 **사실관계**

1)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음악 바우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도에 총 3종류의 음악 바우처(음악 재활 힐링 서비스, 아동 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5060 인생예찬! 장년층 음악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는 음악 멘토링(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등), ‘음악 재활 힐링 서비스’는 악기(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등) 또는 성악 교육, ‘5060 인생 예찬! 장년층 음악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음악이론 및 실기 개인 및 그룹지도(피아노, 기타, 클라리넷, 드럼, 색소폰, 트럼펫,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를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강사 자격기준

가.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원·교습소 등의 장은 제공 인력으로 등록 불가

-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 악기 분류 범주 내의 유사 악기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성악,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 졸업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 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판단

1)피신청인은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사업에실용음악 학위소지자의 제공인력 등록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에는 ‘성악,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석자에 따라 자칫 실용음악 학위소지자들이 제공인력 등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2)본 건 사례에서도 제공인력 등록 시 실용음악 학위소지자가 불이익을 입었음이 확인되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침개정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충분히 인정된다.

□ 결론

피신청인은 ‘제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의 ‘아동·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성악,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를 ‘성악, 실용음악 보컬, 작곡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 제목 : 공동주택 옆 텃밭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요구

□ 신청 취지

신청인 등은 공동주택과 접해있는 부지에 동 주민자치회 주관 ‘공공임대 텃밭 조성 사업’ 시행으로 먼지와 악취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에도 ①비산 먼지 피해(흙먼지 발생 우려), ②악취피해(퇴비와 비료사용), ③해충 및 벌레증가(퇴비살포와 작물재배로 인해 파리,모기, 날벌레 증가 우려), ④교통 및 안전문제(해당부지는 주차장이 별도로 없음), ⑤생활불편 및 건강권 침해(85세대 공동주택 환기불가, 외부활동 제약, 빨래 건조불가 등 일상생활 불편, 농약 살포시 공동주택 내부로 유입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의 주장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으로 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취지하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 1회 이루어진 발갈이와 비료살포로 인해 발생한 먼지와 악취는 비료살포 당일 살수처리로 약 2~3일의 시간이 흐른 후 자연 소멸 되었으며, 이후 현재(2025. 9. 18.)까지 텃밭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악취, 해충,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는바, 향후 사업 추진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사실관계

1. 민원 발생 배경(원인)

○ 사업개요

- 사업 명: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분양형 체험농장 운영)
- 주 관: 동 주민자치회(도비 지원, 총면적 1,348㎡ / 약 400평)
- 참여방식: 구획별 분양(25가구 구분 분양 및 1단체 특별 분양)

○ 추진상황

- ('25. 4.) 토지 임대 사용 무상 협약 체결
- ('25. 6. 27.) 잡초 제거 등 토지정리
- ('25. 7. 8.) 토지 개간 및 비료 살포 작업

2. 조치경과 상세내역

- ('25. 7. 8. ~ 7. 13.)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5건)
 - (민원내용) 텃밭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비료 살포 작업으로 인한 악취 문제 제기, 무료주차장 조성 건의 등
 - (답변내용) 저독성 농약 사용, 불법 주정차단속 등 분양시 각종 유의사항 공지 알림, 준비단계 수준의 발갈이 및 비료살포 향후 미 실시 예정, 해당 토지의 지목(전) 및 소유권(사유지) 안내를 통한 주차장 조성 불가 사유 설명

3. 현장 조사 결과

- 민원인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분양형 체험농장은 인접해 있음. 분양형 체험농장의 발갈이 및 비료살포는 7월 초 1회에 그쳤으며, 비료 포대 등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악취나 비산먼지 발생 또한 확인되지 않음

□ 판단

주민자치회장, 동 담당팀장, 위원회 조사관 참여한 현장점검 결과와 민원 제기 이후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이 제기한 비산먼지, 악취, 농약 유입 등의 피해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분양형 체험농장) 부지가 공동주택과 접해 있어 향후 먼지발생, 퇴비 냄새나 농약 사용, 주차 혼잡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결론

피신청인은 '분양형 체험농장'의 '민원 해소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 제시한 병해충 예방 및 흙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분양자 대상 멀칭비닐 제공, 주요구간 제초매트 설치를 통한 잡초 및 벌레 서식지 억제, 악취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완전 부숙비료 사용, 농약 살포 시 친환경 농약 사용 및 살포 일정 인근 주민에 사전 공지, 개인 차량 이용 시 물품 하역 후 합법적인 주차공간 이동 공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